

#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

우05835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/ 전화 (02)3461-9603 / 전송 (02)3461-9604 / 담당 이관해

문서번호 : 유신문정-19-171호

시행일자 : 2019. 12. 18.

수 신 :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

참 조 : 기반시설부장

제 목 :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(제2회)에 대한 검토 보고

선결		지시	
접 수	일자 시간	결재	
	번호		
	처리과	공람	
	담당자		

1. 시공사 공문 흥문정 제2019-240호(2019.12.16)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하여 도시철도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공사 이/신설 공사의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인 (주)흥화로부터 「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(제2회)」 이 접수되어 동 요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- 붙 임 : 1. 기술검토의견서 1부.  
2. 시공사 공문 사본 1부. 끝.

문정역 연결통로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
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박 종 훈



# 기술검토의견서

공사명	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/신설 공사		
검토건명	제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		
검토자	분야별기술자 이 관 해	확 인 자	책임기술자 박 종 훈 (인)
검토내용	1. 검토목적	2. 현황	3. 검토내용 4. 검토결과

## 검 토 내 용

### 1. 검토목적

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,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“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”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(제2회)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·보고코자 함.

### 2. 현황

#### 1) 공사 개요

- 공사명 : 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,신설 공사
- 공사위치 :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 및 문정역사
- 시공회사 : (주)흥화 외 2개사
- 공사규모 :

공 종	수량	대상	내 용
연결통로	2개소	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앙연결통로 : 면적258.712㎡/폭13.6m/높이5.750m/연장19.064m</li> <li>• 1-2블럭 연결통로 : 면적155.516㎡/ 폭8.0m/높이5.35m/ 연장19.439m</li> </ul>
출입구	2개소	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결통로3 : 면적258.465㎡/폭6.3m/높이13.71m/연장36.060m (E/S 1200형1대, 계단 1.5m 1개소)</li> <li>• 연결통로4 : 면적762.197㎡/폭6.7m/높이11.250m /연장44.900m (E/S 1200형2대, 계단 1.5m 2개소)</li> </ul>
화장실	1개소	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화장실 : 면적151.800㎡/폭4.4m/높이 6.230~11.230m /연장34.50m</li> </ul>
환기구	2개소	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거장 환기구 덕트이설 : 면적158.724㎡/폭6.5m/높이10.39m /연장6.590m</li> <li>• 본선 환기구 덕트이설 : 면적23.132㎡/폭7.801m/높이8.222m /연장2.1m</li> </ul>
냉각탑	1개소	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냉각탑 : 면적143.084㎡/폭9.0m/높이10.39m/연장11.5m</li> </ul>
고지배수로	1개소	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지배수로 이설 : 수로암거 2@(3.0~3.5)×2.0/연장30.764m</li> </ul>
송파대로 보·차도부	1개소	철거및 복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·차도부 철거 및 복구: 면적2000㎡</li> </ul>

#### ○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

구 분	계약금액(천원)	공사기간	비 고
계속비 계약	12,992,187,000	2018.03.05 ~ 2021.03.03	

2) 물가변동(제2회)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내용

○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: 2019.09.01

(단위 : 천원)

물가변동 대상공사금액	물가변동 적용대상금액	지수조정율 (K치)	등락금액	선금급 공제금액	조정금액	계약변경 예정금액
12,992,187	10,786,017	3.60%	388,269	17,616	370,680	13,362,867

3. 검토내용

검토항목	검 토 내 용	적정여부
□ 관련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,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</li> <li>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[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, 2018. 1. 10. 일부개정]</li> <li>·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절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</li> <li>·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</li> </ul> <p>3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</p>	
□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 여부	<p>①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 여부 : 365일 경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준시점 : 2018.09.01(직전조정기준일)</li> <li>- 비교시점 : 2019.09.01(365일 경과)</li> </ul> <p>② 지수조정율 k치 3%이상 여부 : 3.60%</p>	<p>○ 적정 (365일 &gt; 90일) (3.60% &gt; 3%)</p>
□ 물가변동시점을 기준으로한 공사물량 산출의 적정 여부 (적용, 비적용 대상금액)	<p>①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(기준일 : 2019.09.0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정 공정율 : 12.60%(금액 : 1,591,339,000원)</li> <li>- 실행 공정율 : 12.61%(금액 : 1,592,602,000원)</li> <li>- 각 공종별 계획공정 물량과 실행 및 기성(준공) 물량 중 많은 물량을 반영하여 미적용 대상금액 산출 ⇒ 적용제외금액 : 2,206,170,000원(16.98%)</li> </ul> <p>② 물가변동 적용대가 : 10,786,017,000원 (12,992,187,000원 - 2,206,170,000원)</p>	<p>○ 적정</p>
□ 선금급 공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급을 수령한 경우 선금급 비율만큼 물가변동 적용금액에서 제외</li> </ul> <p>① 2019년도 공사예정액(선금지급기준) : 5,400,000,000원</p> <p>② 선금급 공제 제외 대상금액 : 2,170,000,000원</p> <p>③ 선금급 공제액 : 17,616,000원 (5,400,000,000 - 2,170,000,000) X 3.60% X 15.15% [당해연도 물가변동 적용대가 X 지수조정율 X 선금급율]</p> <p>④ 2019년도 선금급 : 818,107,000원(선금급율 : 15.15%)</p>	<p>○ 적정</p>

검토항목	검 토 내 용	적정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□ 물가변동 조정을 (지수조정을) 산출 적정여부	- 기준시점 : 2018.09.01.(직전조정기준일) - 비교시점 : 2019.09.01	○ 적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종 류</th> <th>기준지수</th> <th>비교지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① 노무비</td> <td>직접노무비</td> <td>100.00</td> <td>106.91</td> </tr> <tr> <td>간접노무비</td> <td>100.00</td> <td>106.91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② 경 비</td> <td>국산장비</td> <td>100.00</td> <td>103.39</td> </tr> <tr> <td>외산장비</td> <td>100.00</td> <td>110.91</td> </tr> <tr> <td>기타비목군</td> <td>100.00</td> <td>103.46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③ 재료비</td> <td>광산품</td> <td>113.92</td> <td>115.66</td> </tr> <tr> <td>공산품</td> <td>104.08</td> <td>102.41</td> </tr> <tr> <td>전력,수도,가스</td> <td>95.78</td> <td>98.41</td> </tr> <tr> <td>농림수산물</td> <td>98.70</td> <td>98.96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④ 실적 공사비</td> <td>토목부문</td> <td>100.00</td> <td>106.56</td> </tr> <tr> <td>건축부문</td> <td>100.00</td> <td>106.77</td> </tr> <tr> <td>기계설비부문</td> <td>100.00</td> <td>103.29</td> </tr> <tr> <td>전기부문</td> <td>100.00</td> <td>104.08</td> </tr> <tr> <td>통신부문</td> <td>100.00</td> <td>103.4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8">⑤ 제경비</td> <td>산재보험료</td> <td>100.00</td> <td>98.99</td> </tr> <tr> <td>안전보건관리비</td> <td>100.00</td> <td>103.14</td> </tr> <tr> <td>고용보험료</td> <td>100.00</td> <td>106.91</td> </tr> <tr> <td>퇴직공제부금비</td> <td>100.00</td> <td>106.91</td> </tr> <tr> <td>국민건강보험료</td> <td>100.00</td> <td>106.91</td> </tr> <tr> <td>국민연금보험료</td> <td>100.00</td> <td>106.91</td> </tr> <tr> <td>노인장기보험료</td> <td>100.00</td> <td>123.27</td> </tr> <tr> <td>기타비목군</td> <td>100.00</td> <td>103.4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종 류		기준지수	비교지수	① 노무비	직접노무비	100.00	106.91	간접노무비	100.00	106.91	② 경 비	국산장비	100.00	103.39	외산장비	100.00	110.91	기타비목군	100.00	103.46	③ 재료비	광산품	113.92	115.66	공산품	104.08	102.41	전력,수도,가스	95.78	98.41	농림수산물	98.70	98.96	④ 실적 공사비	토목부문	100.00	106.56	건축부문	100.00	106.77	기계설비부문	100.00	103.29	전기부문	100.00	104.08	통신부문	100.00	103.45	⑤ 제경비	산재보험료	100.00	98.99	안전보건관리비	100.00	103.14	고용보험료	100.00	106.91	퇴직공제부금비	100.00	106.91	국민건강보험료	100.00	106.91	국민연금보험료	100.00	106.91	노인장기보험료	100.00	123.27	기타비목군	100.00	103.46
	종 류		기준지수	비교지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① 노무비		직접노무비	100.00	106.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간접노무비	100.00	106.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② 경 비		국산장비	100.00	103.3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외산장비	100.00	110.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기타비목군	100.00	103.4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재료비		광산품	113.92	115.6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공산품	104.08	102.4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전력,수도,가스	95.78	98.4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농림수산물	98.70	98.9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④ 실적 공사비		토목부문	100.00	106.5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건축부문	100.00	106.7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기계설비부문	100.00	103.2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전기부문	100.00	104.0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통신부문	100.00	103.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⑤ 제경비		산재보험료	100.00	98.9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안전보건관리비	100.00	103.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고용보험료	100.00	106.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퇴직공제부금비	100.00	106.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국민건강보험료	100.00	106.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국민연금보험료	100.00	106.9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인장기보험료		100.00	123.2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비목군		100.00	103.4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지수조정율 : 3.6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## 4. 검토결과

- 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,신설 공사와 관련 도급사인 (주)흥화에서 제출한 2019.09.01(조정기준일) 기준 물가변동(제2회)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
  - 조정기준일(2019.09.01.)은 기준시점(직전조정기준일, 2018.09.01)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(365일)하고,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(3.60%)되는 시점으로, 물가변동 조정여건에 적합하며,
  -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지수산출 등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.
- 동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승인 후 계약금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



# HHI(주)흥 화

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93 기실사무실1층 / 우 138-200 / 안내전화 02)409-8133 / FAX 02)409-8134

문서번호 : 흥문정 제 2019 - 240

2019. 12. 16.

수 신 :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

참 조 :

제 목 : 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

1. 귀 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회사가 도급 시행중인 "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설치 및 부대시설 이/신설공사"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64조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첨부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

----- 1부, "끝"

문 정 역 연 결 통 로 설 치 공 사

현 장 대 리 인 임 재



기반시설부

**물가변동으로 인한(2회)  
계약금액 조정**



**2019. 12.**

**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설치 및 부대시설 이/신설공사**

# 위 치 도



## 물가변동으로 인한(2회) 계약금액 조정보고

### 1. 도급 계약 현황

구 분	최 초	비 고
계 약 일	2018.02.28	
착 공 일	2018.03.05	
준 공 일	2021.12.31	
도 급 액	12,629,676,000	
물가변동(1회)	362,511,000	
변경도급액	12,992,187,000	

### 2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내용

- 1) 물가변동 조정 방법 : 지수조정을
- 2)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근거
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
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
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
- 3) 물가변동 지수조정을 산출 검토
  - 가) 조정기준일
    - 직전조정기준일(기준시점) : 2018.09.01.
    - 조정기준일(비교시점) : 2019.09.01
    - 물가변동 경과기간 : 364일
  - 나) 물가변동 적용 조정기준일 비목군분류 대가 산출(2019. 09. 01기준)
    - 예정 공정율 : 12.60%
    - 실행 공정율 : 12.61%
    - 물가변동 적용 지수 산정 적용 대가 산출(비목군 분류)

구 분	비 율	공사비	비고
도 급 액(A)	100.00%	12,992,187,000	
예정공정(B)	12.60%	1,591,339,000	
실행공정(C)	12.61%	1,592,602,000	
빠른공정[D=MAX(B.C)]	17.18%	2,170,000,000	
누계기성(G)	8.26%	1,043,300,000	
총제외금액(H=MAX(D.G))	17.18%	2,170,000,000	
적용대가[I=(A-H)]	82.82%	10,786,017,000	



### 3.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

구 분		검토 내용	비 고
1. 계약금액(A)		12,992,187,000	
2. 물가변동 적용 제외 금액(B)		2,206,170,000	물가변동적용대가 참조
3.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공정율	예정 공정율	12.60%	전체분 예정공정표 참조
	실행 공정율	12.61%	공정보고 공정표 참조
	기성 공정율	8.26%	조정신청일 이전 기성 참조
	제외 공정율	16.98%	물가변동 대상금액 산출 참조
4. 물가변동적용대가(C)		10,786,017,000	$C = A - B$
5. 물가변동조정율(D)		3.60%	지수조정을 산출표 참조
6.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(E)		388,296,000	$E = C \times D$
7. 선금급 공제 금액(F)		17,616,000	선금급공제 산출근거 참조
8. 물가변동 조정 적용 금액(G)		370,680,000	$G = E - F$

### 4. 검토의견

- “도시철도 8호선 문정역 연결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이,신설공사”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를 상기와 같이 검토 결과, 관련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였으며, 산출된 지수조정율이 3%이상 상회하는  $K=3.60\%$ 로 산출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충족함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